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5509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등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구○○, 부○○
피 고 1. ○○시 ○○출장소장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1. 원고의 피고 ○○시 ○○출장소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시 ○○출장소장이 202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



157,081,540원¹⁾ 및 지방교육세 31,416,300원²⁾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88,497,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³⁾는 2019. 6. 26. 수원지방법원 2019회합146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9. 7. 17.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20. 2. 19.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2020. 2. 20.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76,140,773주를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출자전환'이라 한다), 2020. 2. 24.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와 위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주식 전부를 무상으로 소각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무상감자'라 한다), 같은 날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신주 2,400,000주를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다. 수원지방법원은 2020. 2. 28.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관에게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 이 사건 무상감자에 따른 자본감소 등기,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를 각 촉탁하였고, 그에 따라 2020. 3. 4. 위 각 변경등기가 마쳐졌으며, 2020. 4. 8.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1) 152,281,540원 + 4,800,000원

2) 30,456,300원 + 960,000원

3) 원고(상호 변경 전 : 주식회사 B)는 2024. 4. 4. '합병 전 C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후의 존속회사로, 위 합병과 동시에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B'에서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한편, '합병 전 C 주식회사'의 상호는 당초 'D 주식회사'였으나, 2020. 11. 30. 상호를 'A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하에서는 'D 주식회사', '합병 전 C 주식회사', 원고(합병 및 상호 변경 후의 A 주식회사)를 모두 '원고'로 통칭한다.



라. 피고 ○○시 ○○출장소장은 2023.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금증가 금액 38,070,386,500원 및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증가 금액 1,2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등록면허세 합계 233,332,040원 및 지방교육세 합계 40,383,130원(각 가산세 포함)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23. 6. 7. ○○도지사에게 위 과세예고 통지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도지사는 2023. 7. 12. 원고의 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 ○○시 ○○출장소장은 2023. 7. 17. 원고에게 등록면허세 합계 234,887,150원 및 지방교육세 합계 40,694,15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가, 원고의 의무해태를 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등록면허세에 대한 가산세 합계 77,805,610원 및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세 합계 9,277,85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가산세를 제외한 이 사건 출자전환 및 이 사건 유상증자 관련 등록면허세 157,081,540원(= 234,887,150원 - 77,805,610원) 및 지방교육세 31,416,300원(= 40,694,150원 - 9,277,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7.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90일의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자 2024. 4.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시 ○○출장소장에 대한 청구(주위적 청구)

1) 이 사건 쟁점조항의 우선 적용 주장

가)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조 제4항, 제1항, 제23조 제1항 제4호(이하 위 조항들을 통틀어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는 회생계획에 따라 납입 또는 현물출자가 있는 신주발행에 대한 촉탁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항 제1호는 본문에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이하 위 단서를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 서로 충돌하고 있다.

나) 회생절차에서 증자 및 출자전환을 하면서 법원사무관등이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이 사건 쟁점조항이 특별법으로서 이 사건 단서 규정에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이 사건 쟁점조항의 유효성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합리적이고 정당하여 충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

이 사건 출자전환은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부터 신주를 발행함과 동시에 즉시 무상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자본금 증가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재산권 변동이 없는 행위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예비적 청구)

○○○○부(현재 ○○○○부)는 2015. 8. 20. 구 지방세법의 입법을 예고하면서 이 사건 단서 규정을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서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고,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서도 이 사건 쟁점조항과 이 사건 단서 규정 사이의 충돌 문제에 관하여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졌으며, 국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위 개정법률안을 심사하면서 국회법상 필수적 절차인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등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입법절차에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고, 이러한 위법행위는 관련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고의·과실에 기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근거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세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판단

가. 피고 ○○시 ○○출장소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쟁점조항의 우선 적용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자전환 내지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는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이 사건 쟁점조항은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



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제한 규정'이라 한다)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은 지방세인 등록면허세의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다.

② 이 사건 특례제한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0220호, 2010. 3. 31.) 제3조는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도, 지방세법 이외의 다른 법에 따라 지방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입법자의 의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하면서 기존에 지방세법 이외의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세 감면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조항은 더 이상 지방세인 등록면허세의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③ 원고 주장처럼 '비과세'와 '면제'의 개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특례'의 사전적 정의[일반적 규율인 법령 또는 규정에 대하여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는 규정, 또는 그 법령(표준국어대사전 참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를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이라고 정의하여 이를 세액감면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제한 규정은 '비과세'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쟁점조항은 위 규정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그리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이때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는 각 법률의 입법 목적, 규정 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4590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은 1976. 12. 31. 법률 제2945호로 개정된 이래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규율하여 왔다. 여기에 2015. 12. 29.자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개정된 경위 및 그 취지 등을 보태어 보면, 2023. 12. 29.자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3조의 적용례 대상이 아닌 회생절차와 관련된 자본증가 등기에 대해서는, 이 사건 쟁점조항이 아니라 이 사건 단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한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두33456 판결 참조).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피고 ○○시 ○○출장소장 또는 관련 행정기관이 이 사건 쟁점조항 내지 이 사건 단서 규정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어떤 견해표명을 하였거나, 이 사건 쟁



점조항이 이 사건 단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취지의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주관적으로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비과세 혜택에 관한 신뢰를 기초로 단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2) 한편,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원고의 회생채무 등은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이를 토대로 후속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무상감자를 통하여 회생채무 등이 실질적으로 면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재산권의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자본증가의 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그 성립 이후의 별개 사정에 불과할뿐더러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자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무상감자로 말미암아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피고 ○○시 ○○출장소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신설과 관련하여 정부의 법률안제안 및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상 위법으로 인하여 국회 본회의의 적법한 의결을 거쳐 법률로서 공포·시행된 이 사건 단서 규정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유효하다



면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발생과 입법 절차상의 하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과세처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납세의무자에게 어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시 ○○출장소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김○○

판사 박○○



[별지]

관계 법령

■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 ②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로 하여금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 납입금액 그 밖에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신주의 납입기일
 3.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 ① 제206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등기소의 직무)

④ 삭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 구 지방세법(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비과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8조(세율)

-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 지방세법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 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부칙 <제19860호, 2023.12.29>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